

금융감독원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융감독원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, 금융감독원 대부업감사실		
책임자	김기환 과장(2156-9470) 양일남 실장(3145-8260)	담당자	진형구 사무관(2156-9475) 임주동 팀장(3145-8262)
배포일	2015. 10. 13 (화)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
		총	4매

제 목 : **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이용자 유의 사항 안내 및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예정**

1. 추진 배경

- '14.1.1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은 '14.4.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**법정 최고 금리를 연 39%에서 34.9%로 인하**하면서,
 - 기존 계약에 대한 소급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가능성을 감안하여 법 시행 후 새로이 체결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여 체결되는 대부계약에만 인허된 최고 금리를 적용
- 한편, 최근 대법원은 만기 도래 후 원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**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** 사실상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 **계약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** 판결함에 따라(9.10일),
 - * 그간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으로 해석하여 운용하여 왔음
- 기존 대부이용자가 계약 만기도래시에 **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** 개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됨

□ 이와 함께, 최근 정부가 법정 최고 금리 추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어 대부업체는 금리 인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대부계약 체결시 장기계약(2~3년)으로 유도할 가능성도 상존

□ 이에 따라, 대부업 이용자가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대부계약 체결 및 갱신시 유의사항을 마련하여 안내하여 드림

2.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유의사항

□ 대부이용자가 대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서에 **대부업법상 최고 금리(15.10.13일 현재 연 34.9%)가 마르게 기재**되어 있고,

* 법정 최고 금리에 관한 사항은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(대부업법 제6조제1항)

○ 본인이 적용 받게 되는 금리 수준이 법정 최고 금리 범위 내에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서명할 필요

☞ 대부이용자는 대부계약서에 법정 최고 금리를 기재하지 않거나 최고 금리 상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는 대부업체를 발견시, 금감원 불법자금용 신고센터(☎1332→③)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람

□ 대출 만기 도래 후 계속하여 대출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여야만 법정 최고 금리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음

○ 다만, 기존 계약에 대한 연체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기시점에 이를 모두 상환하는 것이 계약 갱신에 용이

갱신의사 미표시	갱신의사 표시
○ K씨는 '13.5.3일 1천만원을 금리 연 39% 계약기간 1년으로 대출받고 만기 도래 - '14.4.2일 최고 금리가 연 34.9%로 인하 되었음에도 대출만기 당시('14.5.2일) 계약을 갱신하지 않음 - 이후 대출원금 완납시까지 현행 법정 최고 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고 종래 39%에 따른 이자 부담 유지	○ K씨는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후 '14.5.2일 만기 도래 이후 계약을 갱신 - 계약갱신 이후인 '14.5.2일부터는 현행 최고 금리 상한인 34.9%에 따른 이자 부담 ➡ K씨에 비해 연간 41만원의 이자 절감 가능

3 장기(2~3년)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중도에 상환하고 별도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

○ 단, 중도상환 수수료 등 추가 비용 부담 및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절감 효과를 상호 비교할 필요

신규계약 미체결	신규계약 체결
○ K씨는 '13.4.3일 1천만원을 금리 연 39%, 계약기간 3년으로 대출받음 - '14.4.2일 최고 금리가 연 34.9%로 인하 되었음에도 기존 계약에서 정한 금리에 따라 남은 계약기간 동안('14.4.2일~'16.4.2일)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 부담	○ L씨는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후, - '14.4.2일 최고 금리가 인하되자 즉시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대출 받아 기존 대출금 상환 - 이후 신규로 대출(1천만원)을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인화된 금리(34.9%) 적용

4 정부와 국회가 연말을 목표로 최고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대부업체와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,

○ 본인의 자금수요를 감안하여 계약기간을 가급적 단기로 설정해야만, 개정 대부업법 시행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음

장기계약 체결	단기계약 체결
○ K씨는 '15.11.1일 1천만원을 금리 연 34.9%, 계약기간 3년으로 대출받음 - '16.1.1일 최고 금리가 연 29.9%로 인하 되었음에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('16.1.1일~'18.10.31일) 법정 최고 금리 보다 5%p 높은 수준의 이자 부담	○ L씨는 '15.11.1일 1천만원을 금리 연 34.9%, 계약기간 1년으로 대출받음 - '16.11.1일 계약이 만료된 이후 추가 자금 수요가 발생하여 신규로 대출을 받았고, 이후 대출기간 동안('16.11.1일 이후) 인화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음

* 대부업법이 최고 금리 상한을 연 29.9%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기정하에 사례를 구성

3. 최고 금리 인하시설 등 안내 강화 추진

☐ 대부이용자가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,

○ 대부업체에 대해 대출 만기 안내시 최고 금리 인하시설과 함께, 계약갱신시에만 인화된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*

* '15.10.13일(화), 제26차 대부업정책협의회(의장: 금융위원장)에서 의결

<대출만기 문자전송시 내용(예시)>

변경 전	변경 후
고객님의 대부계약은 2015.10.XX.로 종료되며, 2015.10.XX.기준 원리금상환에 정액은 △,△△△,△△△원입니다. 자세한 사항은 ○○지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	고객님의 대부계약은 2015.10.XX.로 종료되며, 2015.10.XX.기준 원리금상환에 정액은 △,△△△,△△△원입니다. 아울러, 2014.4.2.부터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의 이자를 상한이 연 34.9%로 변경되어 갱신시 인화된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○○지점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넓게 들었습니다
바르게 알겠습니다